

IMO 국제해사 정책동향

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, 해사법률, 해사정책, 해시안전,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(www.kmi.re.kr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총 괄 박한선실장

감 수 김태일 본부장

발행인 장영태 원장

☑ 발행처 해운·물류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

■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






IMO, '코로나19 선원 교대 절차서' 공식 승인

IMO 해시안전위원회(MSC)가 '코로나19 선원 교대 절차서'를 승인[®]

- MSC(Maritime Safety Committee)는 102차 회의(11.4~11)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선원의
 안전한 교대 등을 위한 절차서(프로토콜)를 공식 승인함¹)
 -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상운송은 매월 15만 명의 선원 교대가 필요함
 - IMO는 코로나19 사태로 항만당국의 검역 강화와 입항 거부 확대에 따라 선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관련 국제기구, 단체, 회원국 등과 긴밀한 협력을 모색함
 - 이에 따라 IMO는 지난 3월 27일 선원의 원활한 교대, 이동 용이 등을 위한 권고안을 회람서 (4204/Add.6)를 통해 회원국에 협조를 구함
 - 이후 국제해운회의소(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: ICS) 등이 추가로 보완한 절차서가 5월 5일에 회람(4204/Add.14)됨
 - 최근 코로나19 테스트, 격리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한 10월 5일자 회람서 (4204/Add.14/Rev.1)가 공식 채택됨
- 절차서는 우선적으로 회원국이 선원을 핵심 근로자(Key Worker)로 지정할 것을 요청함²⁾
 - 승·하선 제한, 입국금지 등의 이동제한 조치대상에서 선원을 예외로 인정하고 원활한 교대·이동·통과 등의 보장을 권고함
 - 선원 관련 문서를 신분증으로 인정 또는 간소화하고 승·하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
 - 또한 승·하선을 각 6단계(총 12단계)로 나누어 단계별로 정부 및 해운기업이 준수할 내용과 권장사항 등을 규정함
 - * ①거주지 ↔ ②공항 ↔ ③항공기 ↔ ④공항 ↔ ⑤항만 ↔ ⑥선박
 - 한편 선박·선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절차 등도 수립해야 함

¹⁾ Recommended Framework of Protocols for ensuring safe ship crew changes and travel during the Coronavirus (COVID-19) pandemic

²⁾ 국제노동기구(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: ILO)는 IMO와 공동으로 선원의 기본권, 이동 자유, 선용품 공급 등에 대한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등을 발표함



IMO는 선원 교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^{b)}

- ▶ IMO는 국제연합(UN), 산업계, 노동계 등과 국제 공조를 통해 선원 교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음
 - 현재 40만 명의 선원이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, 장기승선으로 인한 피로축적, 정신건강 등의 문제가 심각함
 - IMO는 사무국이 운영하는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(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: GISIS)에 각국의 선원교대 담당자, 항만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기로 함
 - 또한 IMO는 ILO 및 국제민간항공기구(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: ICAO)와 공동으로 선원심벌을 개발하여 선박, 공항 및 통과(환승) 등에서 선원 지정 서비스·절차 등을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 - IMO는 관련 기국, 항만당국, 선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선원의 건강, 안전, 복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과 실용성을 강조함



〈그림 1〉 IMO의 선원교대 대응 국제공조 관련 사진



자료: https://www.imo.org/en/MediaCentre/PressBriefings/pages/32-crew-change-UNGA.aspx (검색일: 2020.11.24.) https://www.imo.org/en/About/Events/Pages/Regional-webinars.aspx (검색일: 2020.11.24.)

- - 해사노동협약(Maritime Labour Convention: MLC, 2007)은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을 12개월로 규정함

- 이에 따라 선원 교대는 선원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임
- 싱가포르는 부유식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선원교대센터(Crew Facilitation Centre)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
- 또한 필리핀 마닐라와 코로나19안전회랑(Covid Safe Corridor)도 구축할 계획임
- 홍콩은 전자의료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등을 발급을 검토하고 있음

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선원 교대를 위한 국제협력 필요

- ♪ 우리나라는 선원 교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항만당국이 선원의 승선기간,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허용함
 - 그러나 장기승선이 선원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등을 이유로 호주 등은 해사노동협약이 정한 최대 승선기간을 더 이상 연장(유예)하지 않기로 함d)
 - 향후 국제협약 또는 IMO 절차서 등의 위반으로 선박운항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해운기업의 시간적·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함
- 특히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준수 및 건강상태를 입증하는 디지털 보건증명서 등의 시행을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함
 - 부산 등 거점항만에서 입출국 및 항공·육상 이동 제한 완화를 통한 선원교대 집중항만 또는 선원교대특구 등을 지정·운영할 수 있음
 - 이러한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협력 논의가 필요하며,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국제기구, 단체, 선원 공급국 등과의 광범위한 공조가 중요함
 - 한편 코로나19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항만, 공항, 출입국 관리, 검역 등의 방역 체계 구축과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임

최영석 부연구위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(yschoe@kmi.re.kr / 051-797-4391)

참고 자료 a) https://www.imo.org/en/MediaCentre/PressBriefings/pages/41-crew-change-protocols.aspx (검색일: 2020.11.24.) b)https://www.imo.org/en/MediaCentre/PressBriefings/pages/32-crew-change-UNGA.aspx (검색일: 2020.11.24.) c) https://www.imo.org/en/MediaCentre/Pages/WhatsNew-1555.aspx?fbclid=lwAR2Z6XuWXKhLPw0-Zyiad9Gp7ipzldf_abJ 6MtNrwpXQIHSLxy8ilHGl7NA (검색일: 2020.11.24.)

d) https://lloydslist.maritimeintelligence.informa.com/LL1134700/Australia-to-end-crew-work-extension-waivers (검색 일: 2020.11.24.)